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4313

제안연월일: 2024. 9.

제 안 자 : 여성가족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심사경과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자	심 사 경 과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	2200703	김남희의원	2024.6.20.	○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 전 체회의(2024.9.4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 위회부 ○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 (2024.9.9.), 제2차(2024.9.19.) 법 안심사소위 상정·심사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	2200987	황명선의원	2024.6.26.	○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 전 체회의(2024.9.4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 위회부 ○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 (2024.9.9.), 제2차(2024.9.19.) 법 안심사소위 상정·심사
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	2201497	박홍근의원	2024.7.8.	 ○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 전체회의(2024.9.4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○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(2024.9.9.), 제2차(2024.9.19.) 법안심사소위 상정·심사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	2201227	송옥주의원	2024.7.1.	 ○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 전 체회의(2024.9.4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 위회부 ○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

법률안				(2024.9.9.), 제2차(2024.9.19.) 법 안심사소위 상정·심사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	2201707	김미애의원	2024.7.12.	 ○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 전체회의(2024.9.4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○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(2024.9.9.), 제2차(2024.9.19.) 법안심사소위 상정·심사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	2202484	서영교의원	2024.8.1.	○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(2024.9.6.) ○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 (2024.9.9.), 제2차(2024.9.19.) 법 안심사소위 상정·심사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	2203287	임미애의원	2024.8.28.	○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(2024.9.6.) ○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 (2024.9.9.), 제2차(2024.9.19.) 법 안심사소위 상정·심사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	2203461	김한규의원	2024.8.30.	○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(2024.9.6.) ○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 (2024.9.9.), 제2차(2024.9.19.) 법 안심사소위 상정·심사

- 나.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4. 9. 23.)는 위 8 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- 다.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(2024. 9. 23.)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·보고한 대로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현행법에서는 비양육부·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·모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,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 한시적 지원이라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·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,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·신용·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,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하여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료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추가함(안 제13조).

나.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14조 및 제

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).

- 다.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함(안 제15조).
- 라.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 득·재산자료 및 금융·신용·보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 및 제17조).
- 마.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함(안 제21조의5).
- 바.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선지급 금액, 지급 기간, 지급 방법 등 선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).
- 사.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,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(안 제21조의10 신설).
- 아.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(안 제27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4.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

제13조제1항 중 "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"을 "양육비 집행권원 확보,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"로,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·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"을 "다음 각 호의 사항을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 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본·초본의 교부 요청

- 2.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「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 서의 교부 요청
- 3.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

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포함한다"를 "포함한다. 이하 같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재산 등"을 "재산(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. 이하같다) 등"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단서 중 "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"를 "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"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중 "금융정보등의"를 "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제1항) 본문 중 "불구하고 양육비"를 "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양육비"로,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"을 "금융기관등"으로, "금융정보·신용정보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를"을 "금융정보등을"로

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"를 "제21조의 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"로, "신용정보·보험정보를"을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금융정보등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제2항) 중 "제1항에 따라"를 "제2항에 따라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제3항) 본문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제4항) 본문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2항 및 제3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제5항)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2항에 따른"을 "제1항부터제3항까지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제6항) 중 "제1항, 제2항 및 제4항"을 "제2항. 제3항 및 제5항"으로 한다.

-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.
-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-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- 3.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

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"제64조제1항제1호"를 "제63조의3제4항에 따 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"로 한다.

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4제1항 중 "제64조제1항제1호"를 "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"로 한다.

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64조제1항제1호"를 "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3개월"을 "10일"로 한다.

제3장의2(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

- 제21조의6(양육비 선지급 신청)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 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(이하 "양육비 선지급" 이라 한다)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 -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

아니한 경우

- 2.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
- 3.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 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(이하 "선지급 신청 인"이라 한다)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·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.
- ④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.
- 제21조의7(양육비 선지급의 결정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 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

-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②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, 지급 기간,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제5조 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.
-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(이하 "선지급 대상자"라 한다)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,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21조의8(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수 있다.
 -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 - 1.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·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

- 2.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 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 가 상실된 경우
-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거나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였을 때에 는 이를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다.
- 제21조의9(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제21조의 8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에게 해 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 다 만,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
 -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,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

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-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이 있으면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면제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의10(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,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, 회수금 처리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의11(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소득·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 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

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,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·재산의 변동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·재산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,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·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-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,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금융·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, 법원행정처, 지방자치단체 및 그밖에 관련 기관·단체의 장(이하 "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"이라한다)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21조의12(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」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등의 제공,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등은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.
- 제21조의13(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) ① 이행관 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 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

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- 제21조의14(압류금지)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를 압류할 수 없다.
- 제21조의15(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인 처리,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·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 용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·보유·이용할 수 있다.
 - 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, 「법인세법」 제111조 및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
 - 국민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보훈급여
 ·공무원연금·공무원재해보상급여·군인연금·사립학교교직원연

- 금·별정우체국연금·농업직불금·농지연금의 가입여부, 가입종 류, 소득정보, 부과액 및 수급액
- 3. 건물, 토지, 자동차,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 액
- 4.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
- 5. 가족관계등록부
- 6.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
- 7. 출입국 정보
-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
- 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산관리시스템은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.
-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,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.
 - 1. 제10조, 제10조의2, 제11조, 제21조의6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
 - 2.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 · 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

요청에 관한 사항

- 3.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항
- 4.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
- 5.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4.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
 - 7.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8.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9.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10.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・운영 등에 관한 사항

제27조제1항 중 "제17조제5항"을 "제17조제6항(제21조의1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.
- 제5조(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,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,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한시적

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양육비 채권자가 이 법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경우 양육비 선지급 실시와 동시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) ①	제6조(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) ①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	
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	
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(이하	
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5.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
	지급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
<u>5.</u> (생 략)	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	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
및 지원에 관한 법률	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7조(양육비이행관리원) ① ~	제7조(양육비이행관리원) ① ~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	<u> </u>
업무를 수행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	<u>4.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</u>
	<u>지급</u>
5. ~ 10. (생 략)	5. ~ 10. (현행과 같음)
⑦ · ⑧ (생 략)	⑦ · ⑧ (현행과 같음)
제13조(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	제13조(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
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	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

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 등) ① -----양육 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 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 행확보 및 제21조의6에 따른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양육비 선지급을-----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 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 | 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본·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 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 를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비 집행권원 확보, 양육비의 이 각 호의 사항을-----

- 1.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비양육부・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 등록표 열람 및 그 등본・초 본의 교부 요청
- 2.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비양육 부・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 의 _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가족관

<신 설>

- ② (생략)
- 제14조(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)

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
 -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 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 적 양육비 긴급지원(이하 "긴 급지원"이라 한다)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원을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

- <u>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</u> 부 요청
- 3.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
- ② (현행과 같음)<삭 제>

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 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 지 아니하여야 하고, 자녀의 복 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 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- ④ 긴급지원의 대상, 금액,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 정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.
-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,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제14조의2(긴급지원 종료 등) ① <삭 제>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 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.

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 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 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 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 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3(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특례) ① 이행관리원 의 장은 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 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 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

<u><</u>삭 제>

례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 다.

제14조의4(비용환수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 기간,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 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자문

<u><삭 제></u>

제15조	도(양육비] 이행	청구	및	조
사)	1				

서를 <u>포함한다</u>)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.

- 1. ~ 6. (생 략)
-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 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,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가 사소송법」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 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 · ④ (생 략)

제16조(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저 에 관한 조사) ① (생 략)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 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, 건강보 험·국민연금,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

<u>포함한다. 이하 같다</u>
1. ~ 6. (현행과 같음)
2
<u>재산</u>
(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
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
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. 이하
<u>같다) 등</u>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세16조(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
에 관한 조사) ① (현행과 같
승)
2

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. 다만, 제14조에 따라 한시 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 략) 제17조(금융정보등의 제공) <신 제17조(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 설>

	·	제21조	<u> 의7에 따</u>
라	양육비	선지급이	결정되어
<u>선</u> 기	이급금이		

보등의 제공) ① 여성가족부장 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· 신 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양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

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

다.

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 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

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
<u>보</u>
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
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자료 또는 정보
3.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 각
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
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
<u>는 정보</u>
<u>②</u>
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양
육비
금융기관등

따른 금융회사등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. 이하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·보험정보를 요청할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도불구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

금융정보등을
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
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
<u>대</u>
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
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(전
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금융정
보등을
③ 제2항에 따라
· ④ 제3항
<u></u>
,

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 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7 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 니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

⑤ 제2항 및 제3항
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
<u>른</u>
<u>⑦</u> 제2항, 제3항 및 제5항

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21조의3(운전면허 정지처분 요 청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 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 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 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지방경찰 청장(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 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 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 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(양 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 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 면허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 서 같다)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(이하 이 조에서 "운전면허 정지처분"이라 한다)을 요청할

<u>.</u>
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
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
제21조의3(운전면허 정지처분 요
, , , , = = , , , , ,
청) ①
제63조의3제4항
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
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

수 있다. 다만,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~ ④ (생 략)
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
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일부개정법률

제21조의4(출국금지 요청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
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
제21조의4(출국금지 요청 등) ①
케요크 이 크게 4취 세
<u>제63조의3제4항에 따른</u>
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
레스4크 레1취 레1호
제64조제1항제1호

② ~ ④ (생 략)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21조의5(명단 공개) ① 여성가 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 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 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 개할 수 있다. 다만, 양육비 채 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~ 3. (생 략)
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 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

·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
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
제21조의5(명단 공개) ①
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
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
제1항제1호
.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
10일

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·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 <신 설> _____

-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
 제21조의6(양육비 선지급 신청)
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
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
 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
 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
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(이하 "양육비 선지급"이라
 한다)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 - 1.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

이하인 경우

- 3.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 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(이하 "선지급 신청인"이라 한다)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 나 조사・질문을 거부・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.
- ④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 다.

제21조의7(양육비 선지급의 결정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 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 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 제21조 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 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 공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 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. ②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, 지급 기간,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 금 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 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.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

④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 (이하 "선지급 대상자"라 한다)

신청인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

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, 양육자 또는 양육 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여성 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 약 한다.

제21조의8(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) ①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.

-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- 1.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자 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 사·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
- 2.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

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 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 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 가 상실된 경우

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 등 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 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.

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양육비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거나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대상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9(양육비 선지급금의 반 환명령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 받아 제21조의8제1항에 따라

<신 설>

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양육 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 다 만,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 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 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 다.

-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,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 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 비 선지급금이 있으면 그 선지 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 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 태롭게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 제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 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10(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 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,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, 회수금 처리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11(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·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

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 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 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 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 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,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・재산의 변동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지 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・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,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·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 신청 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, 변

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 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 계등록전산정보, 금융・국세・ 지방세, 토지・건물・건강보험 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 해보상보험 • 출입국 • 병무 • 보 훈급여 • 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 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 행정기관, 법원행정처, 지방자 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 ·단체의 장(이하 "관계 중앙 행정기관등의 장"이라 한다)에 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·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12(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 이행관 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

<신 설>

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 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21조의6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 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.

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 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 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 을 적은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 한다)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 융정보등의 요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등의 제공, 금융정보등 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등은 제17조제3항부터 제 7항까지를 준용한다.

제21조의13(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,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 다.

제21조의14(압류금지) 양육비 선

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를 압류할 수 없다.

제21조의15(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여성가족부장 관은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인 처리,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·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 집·보유·이용할 수 있다.

에 따라야 한다.

 1.
 「부가가치세법」
 제8조,

 「법인세법」
 제111조
 및

 「소득세법」
 제168조에
 따

 른 사업자등록에
 관한
 자료

- 2. 국민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 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 보훈급여·공무원연금·공무 원재해보상급여·군인연금· 사립학교교직원연금·별정우 체국연금·농업직불금·농지 연금의 가입여부, 가입종류, 소득정보, 부과액 및 수급액
- 3. 건물, 토지, 자동차,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과세표준액
- 4.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
- 5. 가족관계등록부
- 6.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
- 7. 출입국 정보
-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
- 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 산관리시스템은 「사회보장기 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 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 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

제23조(수수료) ① · ② (생략)

<신 설>

다.

- 제23조(수수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국 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이행관리 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,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.
 - 1. 제10조, 제10조의2, 제11조, 제21조의6의 지원 신청에 필 요한 서류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
 - 2.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・모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
 - 3.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

 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

 사항
 - 4.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

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

 사항
 - 5.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

제24조(업무의 위탁) ① 여성가족 제24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-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 탁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 <신 설>

4.·5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<u><신</u> 설>

<u><신</u> 설>

② (생략)

<u>시스템의</u>	구축・운영	등에
관한 사항		
3045437	43 -3 \ \	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의 파 기에 관한 사항
- <u>5.·6.</u>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
- 7.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
- 8.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9.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 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
- 10.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 리시스템의 구축・운영 등에 관한 사항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벌칙) ① 제17조제5항을 제27조(벌칙) ① 제17조제6항(제2

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·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(생 략)<신 설>

1조의12제3항에	따라	준용되는	=
경우를 포함한	<u>다)</u>		_
			_
			_
			_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전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